

제 368 호

1973. 5. 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백 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중앙합판관실

전화 75-6444·6090

# 시 보

차 례

◎ 조 배	
제 768 호	서울특별시교육학에 관한 법제심의회 설치조치중 개정조례 ..... 3
◎ 교 시	
제 65 호	도시지회시설(소로)일부변경폐지및 지회변경승인 ..... 3
제 66 호	도시계획학교시설결정및 지적승인 ..... 4
제 67 호	도시계획학교(중학교용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 5
제 68 호	자립가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결정 ..... 5
제 69 호	도시계획학교(중학교용지)시설변경(폐지) 지적승인 ..... 6
제 70 호	사회단체등록취소 ..... 7
◎ 공 고	
제 87 호	도시계획고도지구 일부지정 ..... 8
◎ 사 령	..... 8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632

**조 제**

한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 5.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 하결 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 768 호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설치조례중 개정조시

1974.10.30 서울특별시조례 제 358 호 개정  
1973. 5.2 서울특별시조례 제 768 호 개정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조직) ①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각국장, 과장, 계장으로 구성하되 그 인원은 5인이상 9인이내로 하고 교육감이 이를 임명한다. \* 불 \* 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부교육감, 각국장, 과장으로 구성한다. \* 로 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된다. \* 불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학부국장과 관리국장이 된다. \* 로 한다.

제 4 조 (회의) \* ①위원장 부재시는 상위적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불 \* ②위원장 은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65 호

도시계획시설 (소로) 일부변경  
(폐지 및 지적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소로) 일부변경과 지적승인할 도시계획법제 12 소와 동법제 13 조 및 정관부고시제 123 호 (73.4.4) 제 4의 2의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평택 구정 시민공사실제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카: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유별번호	쪽원(冊)	연장(冊)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점	소로	2	8	134	부암동 134 (중로2 유56호)	부암동 131 (부암동양계)	서고 73호 (69.9.13)
연경	"	2	8	134	"	"	폐 지

나. 도면: 별첨

1973. 4. 30.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66호

도시계획학교시설결정및  
지적승인

1. 도시계획학교 시설결정 및 지적승  
인용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 및 서대문구청 시  
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4. 30.

서울특별시장

3. 학교시설결정조서

구 분	위 치	시 설 면적(평)	비 고
학 교	서대문구평창동 215, 217, 216-1, 216-2	5,571	

별첨: 도면장초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p>◎서울특별시고시제 67호</p> <p>도시계획학교(중학교용지)시설 건설 및 지역 승인</p> <p>1. 도시계획학교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 시제 123 호(73.4.4)에 의하여 다</p>		<p>음과 같이 고시한다.</p> <p>2. 본제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성북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추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p>								
<p>학 교 시 설 조 서</p>										
구	분	위	지	시	설	면	적	비	고	
학	교	성북구	쌍문동 150-1, 산83-6	22,248	22,248	승 7,722	는	녹지로	설정	제 11
			산83-11							
<p>별첨: 도면생략</p> <p>(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p> <p style="text-align: right;">1973. 4. 30.</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서울특별시고시제 68호</p> <p>자동차등록번호교부수수료경정</p> <p>1. 도로운송 차량법 제 25 조 제 1 항 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p>		<p>호교부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결정 되었기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교 부수수료 경수조례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고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3. 4. 30.</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다									
종	별	규	격	단	위	가	격	이	고
자동차번호표(소형)		1×230	×170	조		130	원	1조	1매
자동차번호표(보통)		1×335	×170	조		480	원	1조	2매
자동차번호표(대형)		1×440	×220	조		720	원	1조	2매
<p>○서울특별시도시계획법 제 12 호 도시계획학교(중학교용지) 시설 변경(폐지) 지적승인</p> <p>1. 도시계획학교(중학교용지) 시설변 경(폐지) 및 지적승인용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전신부 고시 제 123 호(73.4.4)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고시하다</p>					<p>2. 관제도시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p> <p>1973. 5. .</p> <p>서울특별시 장</p>				
<p>3. 도시계획학교(중학교용지) 시설변경 (폐지)</p>									
구	분	위	치	시	설	면	적	비	고
학	교	영	등	포	구	개	봉	운	77
									부
									리
							16,678		평
									지
									역
<p>별첨: 도면참조(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 민 봉사실에 보관)</p>									

고 시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등록을  
취소하였기 이에 같이 고시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70 호

사회단체등록취소

1973년 5월 일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제 8 조의

서울특별시장 양택석

다 음

등록 번호	단 체 명	대 표 자	취 소 이 유	근 거
33	서울소비자대책본부	김 경 석	소재불명및정기보고서 계속 2회이상 불이행	법률제 8 조제 1 항제 2 호제 4 호
34	반공시청각교육연구소	이 경 우	"	"
35	대한무도예술협회중구지부	김 영 규	"	"
38	" 성북지부	이 근 백	"	"
39	" 서울직할지부	안 무 중	"	"
40	" 성동지부	김 혁 연	"	"
41	" 용산지부	박 병 욱	"	"
42	" 종로지부	고 승 부	"	"
45	" 상동제2지부	소 용 택	"	"
47	" 용산제2지부	최 선 규	"	"
51	대한피알협회영등포지부	유 영 도	"	"
55	시민승공생활화해동맹의회	김 영 두	"	"
56	대한무도예술협회남대문지부	김 진 배	"	"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811 호

도시계획고도지구일부지정

당시 관내 서울운동장 주변 일부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 도시계획 115호  
(73.3.31)로 고도지구로 지정되었

기 도시계획법제 12조 제 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관외도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관할 구성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5. 3.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고도지구지정조사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고 도 체 한
신설	서울운동장 주변고도지구	중구원지로 6기및성 동구신당동일부지역	6,900	최고도지구 현지반고(평균 20미 터)에서 12미터이하
신설	"	"	79,200	최고도지구 현지반고(평균 20미 터)에서 9미터이하
신설	"	성동구신당동 일부 지역	8,400	최고도지구 현지반고(평균 24미 터)에서 6미터이하

비첨: 도면표시와 같음(노선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측계 보관

사 명

◎ 1973. 5. 1.

주대건설과 지방건축지원보 (백승환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경 북 지방행정주사 강영걸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7 호봉을 급함.  
종로구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주택관리관 해제함.	지방보건기사보 파견 근무를	김 상 대	보건예과 (주택관리 관실파견) 소년기술원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 근무를 명함.	이 상 필
서대문구 주택관리관 해제함.	지방건축기사보 파견 근무를	주 호 승	구 회 정 리 제 2 과 원 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	기안부공무원 (5급출류토록)	차 영 조
영등포구 주택관리관 해제함.	지방건축기사보 파견 근무를	변 한 섭	공무원교육원 (주택관리관 파견근무중) 주택관리관실 파견 근무 해제를 명함.	전 기 기 차	김 상 울
마포구 주택관리관 해제함.	지방건축기원보 파견 근무를	손 우 현	용 산 구 지방행정주사보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신 태 옥
경동포구 보건소 주택관리관 해제함.	지방보건기원보 파견 근무를	서 질 석	종 로 구 지방행정주사 기획과 근무를 명함.		채 승 기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경기도 전출을 명함.	행정 주사보	전 흥 규	영 등 포 구 지방행정주사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송 기 섭
영등포구 (주택관리 관실파견) 주택관리관실 파견 근무를 해제함.	지방행정서기 파견 근무를	김 영 연	영 등 포 구 지방행정서기보 영등포구 근로자합숙소 근무를 명함.		이 경 피
서대문구 (주택관리 관실파견) 주택관리관실 파견 근무를 해제함.	지방행정서기 파견 근무를	하 두 교	수 도 관 리 사 업 소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보	백 이 상



11-10 제 368 호

시 보

1973.4.3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수도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이공수	시점개발 담당판실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마포구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김권귀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환경과 근무를 명함.	한길수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용산구 근무를 명함.	김오근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마포구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이길우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양재용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박귀홍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송상진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사무관 교수부 주택관리관실 파견 근무를 해제함.	정재대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마포구 근무를 명함.	심재영	경기도 지방행정서기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박용빈
마포구 지방행정주사 성동구 근무를 명함.	유영근	불광동 보조수원지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종로구 근무를 명함.	송영빈	© 1973.5.3. 보전에바파 (간호사업 계장) 동부병원 간호과장에 보함.	박정순
위생연구소 지방행정서기보 성동구 근무를 명함.	김영년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청소제 2과 근무를 명함.	윤재철		
환경과 지방행정주사	김윤인		

<p>마포 병원 (간호과장) 지방간호기과 이금 선          보건의 방과 간호사업 제장에 포함.</p> <p>동부 병원 (간호과장) 지방간호기과 이준 애          영동보병원 간호과장에 포함.</p> <p>보건의 방과 (방역과장) 지방보건기과 이준 화          동대문구 보건소 방역과장에 포함.</p>	<p>동대문구 보건소 (방역과장) 지방보건기과 이영 주          보건의 방과 방역제장에 포함.</p> <p>○ 1973.4.30.          성북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보 이 탁 인          지방간호기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중구보건소 근무를 영함.</p>
<p>시 율 목 별 시 강</p>	
Empty space for content	